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안 번호	26-22
----------	-------

제출년월일: 2026. 2. .

제출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기능개선을 통해 마포아동복지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마포구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중요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위탁사무명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동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마포아동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면적	145.54㎡	234.82㎡
운영사업	영유아통합사례관리, 영유아발달지원사업 및 양육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아동친화사업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동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52조(운영의 위탁 등)

2) 필요성

-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영유아 가정의 편의 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1) 마포아동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2) 조직·인사관리·예산집행 및 회계, 계약 등
- 3) 물품 및 재산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라. 위탁시설개요

- 1) 소재지 및 면적

시설명	소재지	면적(m ²)	개관 예정일
마포아동복지관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마포한강푸르지오 제P101호	234.82	2026. 4. 1.

2)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5년(2024. 5. 30.~2029. 5. 29.)

※ 現 위탁체: (사)일촌공동체

바. 수탁자 선정방식: 재계약

사. 소요예산 (연간)

(단위: 천원)

구분	사업비	산출근거
합계	701,124	
인건비	495,888	- 직원 8명 인건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운영비	47,160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등
사업비	158,076	- 아동친화사업비: 158,076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위탁사무의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운영의 위탁 등)에 따라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효율성 및 주민 편의 증진 여부 검토

- 아동관련 복지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운영체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인 아동친화사업 및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복지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 위탁 대상사무 등) 및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아동복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5호, 2025. 4. 22., 타법개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2021. 12. 21., 2023. 7. 18.>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의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9. 30.] [보건복지부령 제1127호, 2025. 9. 30., 타법개정]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 11. 5., 2020. 1. 3.>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 2. 위탁계약기간
 -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28.]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622호, 2023. 12. 28., 일부개정]

제5조(운영의 위탁 등)

-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2020.12.31., 2023.12.28.>
-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4.3.20., 2020.12.31.>
- ④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라 한다)는 수탁자 선정 시 마다 구성하며,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2020.12.31.>

⑤ 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2020.12.3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9. 18.]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793호, 2025. 9. 18.,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2023.3.9.>

나. 기타사항

○ 아동복지관 주요사업

- 아동의 신체 측정을 통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및 운동 공간 제공
- 아동친화사업(아동권리증진, 놀이와 문화 등) 추진
- 영유아 발달 검사 및 서비스 연계 등

○ 향후일정(안)

- 2026. 2.~3. 現영유아통합지원센터 등 공간 재배치 공사 추진
- 2026. 3.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 2026. 3. 준공
- 2026. 4. 운영 개시